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消防施設工事業法施行規則

[일부개정 2007.12.31 행정자치부령 제 415 호]

제 1장 총칙 第 1 章總則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9>

第 1 条(目的) この規則は、「消防施設工事業法」および同法施行令で委任された事項とそ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改正 2007.1.9>

제 2 장 소방시설업 第 2 章消防施設業

제 2 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CD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별지 제 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1.9, 2007.12.31>

第 2 条(消防施設業の登録申請) ① 消防施設業をしようとする者は、「消防施設工事業法」(この項で"法"という。)第 4 条第 3 項により別紙第 1 号書式の消防施設業登録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業登録申込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特別市長、広域市長、道知事または特別自治道知事(以下"市・道知事"という。)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添付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に添付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7.1.9, 2007.12.31>

1. 민원인 제출서류

1 請願人提出書類

가. 별지 제 2 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기술자격증(자격수첩)

ア 別紙第 2 号書式の消防技術人材連名部および技術資格証(資格手帳)

나. 장비명세서(소방시설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한다) 1부

イ 装備明細書(消防施設業および消防工事監理業に限る。) 1 部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 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ウ 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者が申請である前最近 90 日以内に作成した資産評

価額または企業診断報告書(消防施設工事業に限る)

(1) 공인회계사법」 제 7 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1) 「公認会計士法」第 7 条により財政経済部長官に登録した公認会計士

(2) 건설산업기본법」 제 49 조제 2 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2) 「建設産業基本法」第 49 条第 2 項による専門経営診断機関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2 担当公務員の確認事項(請願人提出省略)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ア 法人登記簿謄本(法人義場合に限る)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申込書類は、業種別で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 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9.7, 2007.12.31>

③ 第 1 項による申込書を提出させ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法人登記簿謄本(法人である場合に限る)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申請人が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これを添付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新設 2006.9.7, 2007.12.31>

제 3 조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CD 시 도지사는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및 장비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2 조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별지 제 3 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별지 제 4 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 5 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第 3 条(消防施設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の交付等) ① 市・道知事は、第 2 条の規定によって登録申請を受けた消防施設業の業種別資本金(個人である場合には資産評価額をいう。)、技術人材および装備が「消防施設工事業法施行令」(以下"令"という。)第 2 条および別表 1 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業の業種別登録基準に適合す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登録申請を受けた日から 15 日以内に別紙第 3 号書式の消防施設業登録証および別紙第 4 号書式の消防施設登録手帳を業種別で交付して、第 2 条第 1 項第 1 号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消防技術者の技術資格証(資格手帳)に登録された消防施設業の技術人材者であることを交付して、別紙第 5 号書式の消防施設業登録台帳に登録事項を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

C2' 시·도지사는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전자운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9>

② 市・道知事は、第 2 条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審査した結果、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10 日以内の期間を定めてこれら補完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7.1.9>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때

1 添付書類(電子文書を含む。)が不備になっている時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들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込書を含む。)および貼付書類(電子文書を含む。)の記載内容が明確でない時

제 시·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③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業登録証および消防施設業登録手帳を交付する場合には、その事実を特別市、広域市道または特別自治道(以下"市・知事"という。)の公報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

제 4 조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1)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 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第 4 条(消防施設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の再交付および返却) ① 法第 4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業者は、消防施設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なくしたり、消防施設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が壊して使えない場合には、市・道知事に消防施設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の再交付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강소방시설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 116 호서식 의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② 消防施設業者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再交付を申請する時には、別紙第 6 号書式の消防施設業登録証(登録手帳)再交付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業登録証再交付申請書を含む。)を市・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

제시 도지사는 제 112 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3 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③ 市・道知事は、第 2 項の規定による再交付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業登録証再交付申込書を含む。)を提出させた時には、3 日以内に消防施設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再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④ 消防施設業者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遅滞なしに市・道知事にその消防施設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を返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때

- 1 法第 9 条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業登録が取り消しになった時

2. 소방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 2 消防施設業を休業または廃業した時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을 때에 한한다

- 3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再交付を受けた時。ただし、消防施設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なくして再交付を受けた場合には、これを再び探した時に限る。.

제 5 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 6 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第 5 条(登録事項の変更申告事項) 法第 6 条で「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重要事項」と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事項をいう。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 1 名称、屋号または営業所所在地

2. 대표자

- 2 代表者

3. 기술인력

- 3 技術人材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1)법 제11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 7 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들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1.9, 2007.12 죄>

第 6 条(登録事項の変更申告等) ①)法第 6 条により消防施設業者は、第 5 条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登録事項の変更がある時には、変更日から 30 日以内に別紙第 7 号書式の消防施設業登録事項変更申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業登録事項変更申告書を含む。)に変更事項別に、次の各号の区分によ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市・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添付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の添付書類に替え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7.1.9, 2007.12 罪>

1. 민원인 제출 서류

- 1 請願人提出書類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ア 名称、屋号または、営業所所在地を変更する場合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消防施設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イ 代表者を変更する場合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消防施設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

다.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ウ 技術人材を変更する場合

(1) 소방시설업등록수첩

(1) 消防施設業登録手帳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変更された技術人材の技術資格証・資格手帳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3) 別紙第2号書式の消防技術人材連名部 1部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2 担当公務員の確認事項(請願人提出省略)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ア 名称、屋号または営業所所在地を変更する場合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 法人登記簿謄本(法人に限る。)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2) 事業者登録証写本(個人に限る。)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イ 代表者を変更する場合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 法人登記簿謄本(法人に限る。)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2) 事業者登録証写本(個人に限る。)

원)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2007.12.31>

② 第1項第1号または第2号による申告書を提出させ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21条第1項により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法人登記簿謄本(法人である場合に限る。)または事業者登録証写本(個人である場合に限る。)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申告であるこの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これを添付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新設 2006.9.7,2007.12.31>

젠시 도지사는 제1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 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거나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 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③ 市・道知事は、第1項の規定によって変更申告を受けた時には、5日以内に消防施設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を新しく交付したり、第1項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消防施設業登録証、登録手帳、技術人材の技術資格証および資格手帳にその変更された事項を記載して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6.9.7>

강;시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의 소

방시설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 2006.9.7>

④ 市・道知事は、第1項の規定によって変更申告を受けた時には、別紙第5号書式の消防施設業登録証に変更事項を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犬 2006.9.7>

제 7조 (지위승계신고 등) 파소방시설업의 지위들 승계한 자는 법 제 7조제 3 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 1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의 전부를 인 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 8 호서식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 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들 포함한다)에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 9 호서식의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 설업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1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 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

第7条(地位継承申告等) ① 消防施設業の地位を継承した者は、法第7条第3項によりその地位を継承してから30日以内に相続人、営業を譲り受けた者と施設の全部を買収した場合には、別紙第8号書式の消防施設業地位継承宣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業地位継承申告書を含む。)に、合併後存続する方法人または合併によって設立される法人の場合には、別紙第9号書式の消防施設業合併申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業合併宣告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を貼付して、市・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添付した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に替え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7.1.9,2007.12.31>

1. 민원인 제출서류

1 請願人提出書類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ア 消防施設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

나.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イ 契約書写本など地位継承を証明す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자격수첩

ウ 別紙第 2 号書式の消防技術人材連名部および技術資格証資格手帳

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에 한한다) 1부

エ 契約日を基準として作成した地位承継人の資産評価額または企業診断報告書(消防施設工事業に限る。) 1 部

마. 장비명세서 1부
オ 装備明細書 1 部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2 担当公務員の確認事項(請願人提出省略)

가.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ア 法人登記簿謄本(地位承継人が法人である場合に限る。)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イ 事業者登録証 写本(地位継承人が個人である場合に限る。)

갑제11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 라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9.7, 2007.12.31>

② 第1 項による申告書を提出させ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
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次の各号の書類を確認しな
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申告人が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これを添付

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 2006.9.7,2007.12.31>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 法人登記簿謄本(地位承継人が法人である場合に限る。)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2 事業者登録証 写本(地位承継人が個人である場合に限る。)

젠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 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 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고/ 제 1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 5 호서식의 소방 시설업등록대장 에는 지위승계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②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申告を受けた時には、14 日以内に消防施設業登録証および登録手帳を新しく交付して、第 1 項第 5 号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技術人材の技術資格証および資格手帳にその変更事項を記載して交付して、別紙第 5 号書式の消防施設業登録台帳には、地位継承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6.9 ‘7>

제 8 조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법 제 8 조제 4 항에서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들 포함한다) 를 말한다<개정 2007.1.9>

第 8 条(消防施設業者が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関係書類) 法第 8 条第 4 項で「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関係書類」とは、次の各号の区分による該当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いう。<改正 2007.1.9>

1. 소방시설설계업 : 별지 제 10 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설계도서

1 消防施設設計業 : 別紙第 10 号書式の消防施設設計記録簿および消防施設設計図書

2. 소방시설공사업 : 별지 제 11 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기록부

2 消防施設工事業 : 別紙第 11 号書式の消防施設工事記録簿

3. 소방공사감리업 : 별지 제 12 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기록부/ 별지 제 13 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3 消防工事監理業 : 別紙第 12 号書式の消防工事監理記録簿、別紙第 13 号書式の消防工事監理業者および消防施設の完工当時設計図書

제 9 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第 9 条(消防施設業の行政処分基準) 法第 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業の登録取り消し等の行政処分に対する基準は、別表 1 のとおり。

제 10 조 (과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 10 조제 2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第 10 条(過程金を賦課する違反行為の種別と過程金の賦課基準) 法第 10 条第 2 項の規

定によって過程金を賦課する違反行為の種別とそれに対する過程金の賦課基準は、別表 2 のとおり。

제 11 조 (과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 10 조 제 2 항 및 영 제 21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 한 과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第 11 条(過程金および過怠金徴収手続き) 法第 10 条第 2 項および令第 21 条第 4 項の規定による過程金および過怠金の徴収手続きに関しては、「国庫金管理法施行規則」を準用する。この場合、過怠金の納入告知書には、異議方法および異議期間等を共に掲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

제 3 장 소방시설공사 등 第 3 章 消防施設工事等

제 1 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第 1 節 消防施設工事着工申告等

제 12 조 (착공신고 등) (1)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13 조 제 1 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 14 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21 조 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1.9, 2007.12.31>

第 12 条(着工申告等) ① 消防施設工事業者(以下「工事業者」という。)は、消防施設工事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法第 13 条第 1 項により該当消防施設工事の着工前までに、別紙第 14 号書式の消防施設工事着工(変更)申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工事着工(変更)申告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貼付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添付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貼付書類によ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7.1.9, 2007.12.31>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1 工事業者の消防施設工事業登録証写本および登録手帳

2.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사본

2 当該消防施設工事の責任施工および技術監理をする技術人材の技術資格証(資格手帳)写本

3.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의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3 設計図書(仕様書を含むものの、「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第 7 条の規定による建築許可同意時に提出された設計図書に変更がある場合に限る。)

4. 별지 제 31 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別紙第 31 号書式の消防施設工事下請け通知書写本(消防施設工事を下請けする場合に限る。)

꽃법 제 13조제 112 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法第 13 条第 2 項で「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重要な事項」と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事項をいう。

1. 시공자

1 施工者

2. 삭제 <2007.1.9> 削除

3.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設置される消防施設の種類

4.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4 責任施工および技術監理消防技術者

5. 삭제 <2007.1.9> 削除

:꽃법 제 1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 2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 일 이내에 별지 제 14 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 (변경)신고서 1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들 포함한다j 에 제 1항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이 있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③ 法第 13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工事業者は、第 2 項各戸の 1 に該当する事項の変更がある場合には、変更日から 14 日以内に別紙第 14 号書式の消防施設工事着工(変更)申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工事着工(変更)申告書を含む。)に第 1 項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中、変更がある該当書類を添付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7.1.9>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 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성명 시공현장의 명칭 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 별지 제 15 호 서식의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消防施設工事着工申告または変更申告を受けた時には、3 日以内に消防施設業登録手帳に消防施設工事現場に配置される消防技術者の資格証番号、姓名、施工する現場の名称、所在地および現場配置期間を記載して交付して、別紙第 15 号書式の消防施設着工および完工台帳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て管理し

なければならな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 16 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에 의한 소방시설공사현황 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消防施設工事着工申告または変更申告を受けた時には、工事業者に対し、別紙第 16 号書式の消防施設工事現況表示による消防施設工事現況の掲示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제 13 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핏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4 항에 따라 별지 제 17 호서식의 소방 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 18 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

第 13 条(消防施設の完工検査申請等) ① 工事業者は、消防施設工事の完工検査または部分完工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場合には、法第 14 条第 4 項により別紙第 17 号書式の消防施設工事完工検査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工事完工検査申込書を含む。)または別紙第 18 号書式の消防施設の部分完工検査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の部分完工検査申込書を含む。)を、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貼付書類に対する情報率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に替え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7.1.9, 2007.12.31>

간.제1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114 조제 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결과 또는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9 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 20 호서식 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을 공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第1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完工検査申請または部分完工検査申請を受けた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法第 14 条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る現場確認結果または監理結果報告書を検討した結果、該当消防施設工事が法令と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と認める場合には、別紙第 19 号書式の消防施設完工検査済証または別紙第 20 号書式の消防施設の部分完工検査済証を工事業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4 조 (소방사철회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 7 조제 1 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라 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1.9, 2007.12.31>

第 14 条(消防施設工事の過失補修の履行を保証する証書) 令第 7 条第 1 項本文で「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過失補修の履行を保証する証書」と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 <改正 2007.1.9, 2007.12.31>

- 1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1 「保険業法」によって保険会社業者が発行した保証保険証券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2 「韓国産業銀行法」による「韓国産業銀行、韓国輸出入銀行法」による韓国輸出口銀行または「銀行法」第2条による金融機関が発行した支給保証書
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84조의 1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 3 「証券取引法施行令」第84条の16第2項の規定による有価証券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4 「信用保証基金法」による信用保証基金、「技術信用保証基金法」による技保証基金、「地域信用保証財団法」による信用保証財団または「エンジニアリング技術振興法」によるエンジニアリング共済組合が発行した債務額等の支給を保証する保証書
5.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채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5 「銀行法」第2条の規定による金融機関または滯船関が発行した定期預金証書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6 「信託業法」によって信託会社が発行する収益証券

제 2 절 소방공사감라자의 지정신고 등 第 2 節 消防工事監理者の指定申告等

제 15조 (소방공사감라자의 지정신고 등)(1)법 제1117조제11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라자를 지정한 때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 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 라자지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용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1.9, 2007.12.31>

第 15 条(消防工事監理者の指定申告等) ① 法第 17 条第 2 項により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は、工事監理者を指定した時には、着工申告日までに別紙第 21 号書式の消防工事監理者指定申告書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添付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に替え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7.1.9,2007.12.31>

1 소방공사감라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1 消防工事監理登録証 写本 1 部および登録手帳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려하는 소속감리원의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2 当該消防施設工事を完了する所属監理員の監理員の等級を証明す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各 1 部

3. 별지 제 22 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3 別紙第 22 号書式の消防工事監理計画書 1 部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4 消防工事監理サービス契約書写本 1 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 17조제 2 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 23 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1 항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들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

② 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は、工事監理者の変更がある時には、法第 17 条第 2 項後段により変更日から 30 日以内に別紙第 23 号書式の消防工事監理者変更申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工事監理者変更申告書を含む。))に第 1 項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貼付書類に対する情報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に替え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7.1.9, 2007.12.31>

[5]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 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협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工事監理者の指定申告または変更申告を受けた時には、3 日以内に処理して工事監理者の登録手帳に配置される監理員の等級、監理現場の名称、所在地および現場配置期間を記載して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6 조 (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E 법 제 1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第 16 条(監理員の細部配置基準等) ① 法第 18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監理員の細部的な配置基準は、次の各号の区分による。

1. 영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대상인 경우

1 令別表 3 の規定による常駐工事監理対象である場合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ア 機械分野の監理員資格を取得した者と電気分野の監理員資格を取得した者各 1人以上を責任監理員として配置すること。ただし、機械分野および電気分野の監理員資格を共に取得した者がいる場合には、それに該当する者 1人以上を配置することができる。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 할 것

イ 消防施設用配管(電線管を含む。以下同じ。)を設置したり、埋めたりする時から消防施設完工検査済証を交付してもらう時まで、消防工事監理現場に責任監理員を配置すること。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감리대상인 경우

2 令別表 3の規定による一般工事監理対象である場合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ア 機械分野の監理員資格を取得した者と電気分野の監理員資格を取得した者各 1人以上を責任監理員として配置すること。ただし、機械分野および電気分野の監理員資格を共に取得した者がある場合には、それに該当する者 1人以上を配置することができる。

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イ 別表 3の規定による期間の間責任監理員を配置すること。

나.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ウ 責任監理員は、週 1 回以上消防工事監理現場を訪問して監理すること。

라‘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인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 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エ 1人の責任監理員が担当する消防工事監理現場は、5 個の以下として監理現場の延面積の総合計が 10 万㎡以下であること。ただし、地下階を含んだ階数が 16 階未満であるアパートの場合には、延面積の合計に関係なく、1 人の責任監理員が 5 ヶ所以内の工事現場を監理することができる。

21 영 별표 3 상주공사감리의 방법란 각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를 말한다;

② 令別表 3 常駐工事監理の方法欄各目で、「行政自治部令が決める期間」とは、消防施設用配管を設置したり、埋めたりする時から消防施設完工検査済証を交付してもらう時までをいう。

췌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가목 및 나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③ 令別表 3 一般工事監理の方法欄アおよびイで「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期間」とは、別表 3 の規定による期間をいう。

제 17 조 (감리원배치통보 등) 퍼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 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4 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전자 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 보서를 포함한다)에 , 배치한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 25 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원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 일 이내에 영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07.12.31>

第 17 条(監理員配置通知等) ① 消防工事監理者は、第 16 条第 1 項により監理員を消防工事監理現場に配置する場合には、別紙第 24 号書式の消防工事監理員配置通知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工事監理員配置通知書を含む。)に、配置した監理員の変更がある場合には、別紙第 25 号書式の消防工事監理員配置変更通知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工事監理員配置変更通知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区分による該当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監理員配置日から 7 日以内に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通知された内容を 7 日以内に令第 20 条第 3 項により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学歴および経歴の認定業務を委託された法人(以下「消防技術者認定者」という。)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2007.12.31>

1.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들 포함한다)

1 消防工事監理員配置通知書に添付す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

가. 영 별표 1 제3 호 부표 2 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ア 令別表 1 第 3 号附表 2 の区分による監理員の等級を証明する書類

나.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イ 消防工事監理契約書 写本 1 部

나. 별지 제 2 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ウ 別紙第 2 号書式の消防技術人材連名簿 1 部

2.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消防工事監理員配置変更通知書に添付す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ア 変更された監理員の等級を証明する書類(監理員を配置する場合に限る。)

나.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イ 変更前監理員の等級を証明する書類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C**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ウ 別紙第2号書式の消防技術人材連名簿(監理員を配置する場合に限る。) 1部

원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그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07.12.31>

② 第1項により配置された監理員がその経歴を認められようとする場合には、別紙第26号書式の消防工事監理員協力証明書発行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工事監理員協力証明書発行申込書を含む。)によって消防技術者認定者に経歴手帳に発行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 2007.12.31>

G))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 1127 호서식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③ 第2項により申請を受けた消防技術者認定者は、監理員の経歴を確認した後、別紙第27号書式によって経歴証明書率を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2.31>

강)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2007.12.31>

④ 監理員協力証明書発行および監理員等級を証明す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の発行等に関して必要な細部事項は、消防技術者認定者が定めて消防防災庁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 2007.12.31>

제 18 조 (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라 공사업자에 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들 계속하 는 때에는 법 제 19 조제 3 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 는 날부터 3 일 이내에 별지 제 28 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1.9, 2007.12.31>

第18条(違反事項の報告等) 消防工事監理業者は、法第19条第1項により工業者にことが該当工事の是正または補完を要求したが履行しなくてその工事継続する時には、法第19条第3項により是正または補完を履行しなくて工事を継続する日から3日以内に、別紙第28号書式の消防施設工事違反事項報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工事違反事項報告書を含む。)を消防

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工事業者の違反事項を確認できる写真など証拠書類(電子文書を含む。)がある時には、これを消防施設工事違反事項報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工事違反事項報告書を含む。)に貼付して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組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添付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に替え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7.1.9,2007.12.31>

제 19 조 (감리결과와 통보 등)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소방공사감리들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 29 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 | 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시설공사의 도 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통보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第 19 条(監理業者の通知等) 法第 20 条の規定によって監理業者が消防工事監理を完了した時には、別紙第 29 号書式の消防工事監理結果報告(通知)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工業監理結果報告(通知)書を含む。) 以下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工事が完了した日から 7 日以内に、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である消防施設工事の等級人および特定消防対象物の工事を監理した建築会社に通知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

1. 별지 제 30 호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

1 別紙第 30 号書式の消防施設性能試験調査表 1 部

2. 착공신고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되, 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한한다) 1 부

2 着工申告後変更された消防施設設計図書(変更事項がある場合に限り添付するもので、法第 11 条の規定による設計業者が設計した図書に限る。) 1 部

3. 별지 제 13 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別紙第 13 号書式の消防工事監理者(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報告する場合に限る。)

제 2 절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통지 등 第 3 節 消防施設工事の下請け通知等

제 20 조 (하도급의 통지) ①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 31 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들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1.9>

第 20 条(下請けの通知) ① 工事業者は、下請けをしようしたり、下請受給人を変更する場合には、法第 22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別紙第 31 号書式の消防施設工事下請け通知書

(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工事下請け通知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あらかじめ関係人および発注者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7.1.9>

1. 하도급계약서 1부

1 下請け契約書 1 部

2. 예정공정표 1부

2 予定工程表 1 部

3.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3 工事量、工事単価および工事金額が明示された工事内訳書 1 部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下請受給人の消防施設工事ア業登録証 写本 1 部

[25 제1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7.1.9>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下請けをしようとする工事業者は、関係人および発注者に通知した消防施設工事下請け通知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工事下請け通知書を含む。)写本を下請受給人に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7.1.9>

G)) 공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법 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③ 工事業者は、下請け契約を解約する時には、法第 22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下請け契約解約事実を証明でき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関係人および発注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7.1.9>

제 21 조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가준 산정방식) 법 제 25 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개정 2007.12.31>

第 21 条(消防技術サービスの代価基準算定方式) 法第 25 条で「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方式」とは、「エンジニアリング技術振興法」第 10 条第 2 項により科学技術部長官が認可するエンジニアリング事業代価の基準中、実費定額加算方式をいう。 <改正 2007.12.31>

제 22 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과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들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시공능력평가자"라 한다)에게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1.9, 2007.12 제>

第 22 条(消防施設工事施工能力評価の申請) ① 法第 26 条第 1 項により消防施設工事の施工能力評価を受けようとする工事業者は、法第 26 条第 2 項により別紙第 32 号書式の消防施設工事施工能力評価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消防施設工事施工能力評価申込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令第 20 条第 2 項により施工能力評価および工事に関する業務を委託された法人(以下「施工能力評価者」という。)に、毎年 2 月 15 日(第 5 号の書類に対しは、法人の場合には毎年 4 月 15 日、個人の場合には毎年 6 月 10 日)まで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添付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に替え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7.1.9, 2007.12 罪>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工事实績を証明する次の各目の区分による該当書類(電子文書を含む。)

가. 다목 및 라목 외의 국내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 33 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 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시공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ア ウおよびエ以外の国内消防施設工事の場合:当該発注者が発行した別紙第 33 号書式の消防施設工事实績証明書および付加価値税法令による税金計算書(供給者保管用)写本や所得税法令による計算書(供給者保管用)写本。ただし、維持、保守工事においては工事施工内訳書に行なうことができる。

나. 해외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겨1 약서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イ 海外消防施設工事の場合:在外共同売場が発行した海外工事实績証明書または工事契約書写本が添付された外国為替銀行が発行した外貨入金証明書

다.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ウ 駐韓国際連合軍その他の外国軍の機関から請負受けた消防施設工事の場合:取り引きする外国為替銀行が発行した外貨入金証明書および請負契約書写本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 34 호서식의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를 포함한다)

エ 工事業者の自分需要による消防施設工事の場合:当該工事の監理者が発行する別紙第 34 号書式の自分需要工事施工確認書(電子文書になった自分需要工事施工確認書を含む。)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사본

2 評価を受ける海外前年度末日現在の消防施設工事業登録手帳 写本

3. 별지 제 35 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3 別紙第 35 号書式の消防技術者保有現況

4. 신인도 평가를 위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당해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4 信任度評価のため、次の各目の1に該当する書類(当該書類がいる場合に限る。)

가. 별지 제 36 호서식의 품질경영인증 (150 9000)취득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품질경영 인증(1509000)취득신고서를 포함한다]

ア 別紙第 36 号書式の品質管理認証(150 9000)取得申告書 (電子文書になった品質管理認証(150 9000)取得申告書を含む。)

나. 별지 제 37 호서식의 우수소방시설공사사업자지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우수소방시설공사사업자지정신고서를 포함한다)

イ 別紙第 37 号書式の優秀消防施設工事業者指定申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優秀消防施設工事業者指定申告書を含む。)

다. 별지 제 38 호서식의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사업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사업자신고서를 포함한다)

ウ 別紙第 38 号書式の表彰受賞、消防施設工事業者申告書(電子文書になった表彰受賞消防施設工事業者申告書を含む。)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5 次の各目の1に該当する書類 写本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 6 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ア 「法人税法」および「所得税法」の規定によって管轄税務署長に提出した租税に関する申告書(「税理士法」第 6 条により登録した税理士が確認したものとして貸借対照表および損益計算書が含まれたものをいう。)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 회계감사를 재무제표

별지 제 36 호

イ 「株式会社の外部監査に関する法律」により外部監査人の会計監査を財務諸表

다 「공인회계사법」 제 7 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 24 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ウ 「公認会計士法」第 7 条により登録した公認会計士または同法第 24 条により登録した会計法人が監査した会計書類

C2 ' 그 밖에 시공능력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은 시공능력평가자가 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その他に施工能力評価および手数料等業務遂行に関して必要な細部規定は、施行能力評価者が定めるものの、消防防災庁長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手数料の承認に関する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3 조 (시공능력의 평가) (1)법 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은 별표 4 와 같다.

第 23 条(施工能力の評価) ① 法第 26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施工能力評価の方法は、別表 4 のとおり。

원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 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공시의 효력발생시기들 다르 게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評価された施工能力は、工事業者が請負受けることができる 1 件の工事受給金額として、施工能力評価の有効期間は、公示日(公示の効力発生時期を違うように定めた場合にはその時期をいう。以下この項で同じ。)から 1 年の間とする。ただし、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理由と評価された施工能力の有効期間は、当該施工能力評価結果の公示日から 1 年の間とする。

1.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1 法第 4 条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工事業を登録した場合

2. 법 제 7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양수·합병하거나 시설의 전부들 인수한 경우

2 法第 7 条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工事業を相続、譲渡、合併したり、施設の全部を買収した場合

∴ D 시공능력평가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고/ 매년 7 월 31 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 12 조제 111 항에 따른 등록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② 施工能力評価者は、施工能力を評価した場合には、その事実を該当工事事業者の登録手帳に記載して交付し、毎年 7 月 31 日まで各工事事業者の

施工能力을 日刊新聞(「新聞等の自由と機能保障に関する法律」第 2 条第 2 号アまたはイに該当する日刊新聞として同法第 12 条第 1 項による登録時全国を普及地域で登録した日刊新聞をいう。以下同じ。)またはインターネット 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 2 項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理由で施工能力を評価した場合には、インターネット 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7.12.31 >

제 4 장 소방기술관리 第 4 章 消防技術監理

제 24 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폐법

제 2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1.9>

第 24 条(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学歴および経歴の認定範囲等) ① 法第 28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学歴および経歴の認定範囲は、次の各号のとおり。<改正 2007.1.9>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소방기술사·소방설비가사·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가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가스가능장·가스가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1 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消防技術士、消防設備技士、消防設備産業技士、危険物可能長、危険物産業技士、危険物技能士、加工技術士、加工技士、加工産業技士、電気技士、電気産業技士、建築電気設備技術士、電気技能長、電気工事技士、電気工事産業技士、電気機器産業技士、建築士、建築技士、、建築産業技士、産業安全技士、産業安全産業技士、ガス技術士、ガス技能長、ガス技士、ガス産業技士、建築機械設備技術士、建築設備技士、建築設備産業技士、冷凍機械技術士、冷凍機械技士、冷凍機計算産業技士、一般機械技士、鉱山セキユリティー技士または鉱山セキユリティー産業技士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들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1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들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2 消防技術に関連した学歴 :消防安全管理学科(消防安全管理科、消防システム科、消

防科学科を含む。)、電気工学科(電気科、電気設備科、電子工学科、電気電子科、電気および電子工業学科、電気制御工学科を含む。)、産業安全工学科(産業安全科、産業工学科、安全工学科、安全システム工学科を含む。)、機械工学科(機械科、機械学科、機械設計学科、機械設計工学科を含む。)、建築工学科(建築科、建築学科、建築設備学科、建築設計学科を含む。))または化学工学科(工業化学科、化学工業科を含む。)を卒業した者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3 소방技術に関連した経歴

가.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관리업/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ア 消防施設工事業、消防施設設計業、消防工事監理業、消防施設監理業、危険物安全監理業務代行機関、韓国消防安全協会、韓国消防検定工事、「火災による災害補償と保険加入に関する法律」による韓国火災保険協会、国家・地方自治体、「政府投資機関管理基本法」による政府投資機関、「共企業の経営構造改善および民営化に関する法律」第2条による政府出資機関。「地方公企業法」による地方工事または地方公団に消防施設の設計施工監理または消防施設の点検および維持管理業務を遂行した経歴

나.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イ 消防技術士、消防設備技士、消防設備産業技士資格を取得した者が防火管理者で選任されて防火管理業務遂行した経歴

2)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 력을 가진 차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 39 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소방기술사·소방설비가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 가 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7.1.9, 2007.12.31>

② 消防技術者認定者は、法第 28 条第 1 項により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学歴および経歴を持つ者を消防技術士と認定する時には、別紙第 39 号書式の消防技術認定資格手帳(以下「資格手帳」という。)を発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消防技術士、消防設備技士、消防設備産業技士、危険物技能長、危険物産業技士、危険物技能士を除く。<改正 2007.1.9,2007.12.31>

칭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その他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手帳の発行および手数料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

제 25 조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 28 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第 25 条(消防技術認定資格の停止および取消しに関する基準) 法第 28 条第 4 項の規
定による消防技術認定資格の停止および取消し基準は、別表 5 のとおり。

제 26 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1)소방기술자는 법 제 29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무교육을 2 년마다 1 회 이상 받아야 한다.

第 26 条(消防技術者の実務教育) ① 消防技術者は、法第 2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
て実務教育を 2 年ごとに 1 回以上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췌영 제 20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
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 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정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 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실시 10 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令第 20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技術者実務教育に関する業務を委託された韓
国消防安全協会または実務教育指定機関の長(以下「実務教育機関の長」という。)は、
消防技術者に対する実務教育を実施しようとする時には、教育日程等教育に必要な計
画を樹立して、消防防災庁長に報告した後、教育実施 10 日前まで教育対象者に通知
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제111 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및 수수료 그 밖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実務教育の時間、教育科目および手数料その他の実務教育に関
して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

제 27 조 (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CL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 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 수료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第 27 条(教育修了事項の記載等) ① 実務教育機関の長は、実務教育を修了した消防技
術者の資格手帳または技術資格証に教育修了事項を記載、捺印して交付しなければなら
ない。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 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실무교육수료자명단을 교육대
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実務教育機関の長は、別紙第 40 号書式の消防技術者実務教育終了者名簿を教育対象者
が所属した消防施設業の業種別で作成して必要な事項を記録して備えつけなければなら
ない。

제 28 조 (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실무교육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의 계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第 28 条(監督) 消防防災庁長は、実務教育機関の長が実施する消防技術者の実務教育の計画、
実施および結果に対し、指導、監督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5 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 등 第 5 章 消防技術者実務教育機関の指定等

제 29 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E 법 제 2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 과 같다.

第 29 条(消防技術者実務教育機関の指定基準) ① 法第 29 条第 4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技術者に対する実務教育機関の指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が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実務教育に必要な技術人材および施設装備は、別紙 6 のとおり。

:2제1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実務教育機関の指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非営利法人で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0 조 (지정신청)(1)법 제1129조제114 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 41 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1.9 ,

2007.12 죄>

第 30 条(指定機関) ① 法第 29 条第 4 項により実務教育機関の指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41 号書式の実務教育機関指定申請書(電子文書になった実務教育機関指定申請書を含む。)に、次の各号の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添付して、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添付書類に対する情報を確認できる場合には、その確認で添付書類に替え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7.1.9,2007.12 罪>

1. 민원인 제출서류

1 請願人提出書類

가. 정관 사본 1부

ア 請願書 写本 1 部

나. 대표자·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イ 代表者、各支部の責任役員および技術人材の資格を証明でき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と技術人材の名簿および履歴書 各 1 部

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ウ 建物の所有者が女子供の場合、建物賃貸借契約書写本およびその他に事務室保有を証

明できる書類(電子文書を含む) 各 1 部

라' 교육장 도면 1부

エ 教育場 図面 1 部

마.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オ 施設および装備明細書 1 部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2 担当公務員の確認事項(請願人提出省略)

가. 법인등기부등본

ア 法人登記簿謄本

나.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イ 建物の所有者である場合、建物登記簿謄本

② 제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9.7,2007.12.31>

② 第 1 項による申込書を提出させ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り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次の各号の書類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申請人が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これを添付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 2006.9.7,2007.12.31>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 法人登記簿謄本 1 部

2. 건물등기부 등본(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

2 建物登記簿謄本 1 部(建物の所有者である場合に限る。)

제 31 조 (서류심사 등) 파소방방재청장은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 29 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자들 현장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07.1.9>

第 31 条(書類審査等) ① 消防防災庁長は、第 30 条の規定によって実務教育機関の指定申請を受けた時には、第 29 条の指定基準に適合してから可否を現場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消防防災庁長は、「消防基本法」第 40 条の規定による韓国消防安全協会に所属された者を現場確認に参加させ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7.1.9>

2) 소방방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하거나 현장확인결과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 ② 消防防災庁長は、申請者が提出した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込書を含む。)および添付書類(電子文書を含む。)が不備だったり、現場確認結果、第 29 条の規定による指定基準に適合しない時には、15 日以内の期間を定めてこれら保管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保管期間内に保管しない時には、申込書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

제 32 조 (지정서교부 등) (1)소방방재청장은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확인한 결과 제 29 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 42 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第 32 条(指定書交付等) ① 消防防災庁長は、第 30 条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書類(電子文書を含む。)を島社と現場確認した結果、第 29 条の指定基準に適合した場合には、申請日から 30 日以内に別紙第 42 号書式の実務教育指定書(電子文書になった実務教育機関指定書を含む。)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9＞

21 소방방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소재지·교육실시범위 및 교육업무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実務教育機関を指定した時には、指定した実務教育機関の名称、代表者所在地、教育実施範囲および教育業務開始日等教育に必要な事項を官報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3 조 (지정.A}항의 변경) 제 32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0 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33 条(指定事項の変更) 第 3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実務教育機関と指定された機関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時には、変更日から 10 日以内に消防防災庁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대표자 또는 각 치부의 책임임원

1 代表者または各支部の本口役員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2 技術人材または施設裝備等指定基準

3. 교육기관명칭 또는 교육기관의 소재지

3 教育機関名称または教育機関の所在地

제 34 조 (휴·폐업 신고 등) (1)저 11 3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 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J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날의 14 일 전까지 별지 제 43 호서식의 휴업 재개업·폐업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지정서 1 부를 첨부(폐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34 条(休、廃業宣告等) ① 第 3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指定を受けた実務教育機関が休業、廃業または再開業をしようとする時には、休業または再開業をしようとする日の 14 日前まで、別紙第 43 号書式の休業、再開業、廃業報告書に、実務教育機関指定書 1 部を添付(廃業をする場合に限る。)して消防防災庁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쫓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방문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報告は、訪問電話、模写電送またはコンピュータ通信とすることができる。

:: D 소방방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 들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 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③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休業報告を受けた場合には、実務教育機関指定書に休業期間を記載して交付して、廃業報告を受けた場合には、実務教育機関指定書を回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消防防災庁長は、休業、再開業、廃業事実をインターネット等を通じて広く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5 조 (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lj 실무교육지정기관은 매년 11월 30 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35 条(教育計画の樹立、公告等) ① 実務教育指定機関は、毎年 11 月 30 日まで次の年度教育計画を実務教育の種類別、対象者別、地域別で樹立してこれを日刊新聞に広告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쫓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教育計画を変更する場合には、変更した日から 10 日以内にこれを日刊新聞に公告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6 조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질적 보고) lj 실무교육지정기관은 당해연도 교육종 료 후 직능별 지역별 교육수료자 병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第 36 条(教育対象者管理および教育実施報告) ① 実務教育指定機関は、当該年度教育終了後、職能別、地域別、教育終了者名簿を作成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次の年度 1 月末まで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실무교육지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교육횟수·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実務教育指定機関は、毎年 1 月末まで前年度教育回数、人員および対象者等教育実績を消防防災庁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6 장 보칙 第 6 章補則

제 37 조 (수수료 기준)(1)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 과 같다.

第 37 条(手数料基準) ① 法第 34 条の規定による手数料または教育費は、別表 7 のとおり。

2) 제 11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手数料は、その地方自治体の収入証紙で、教育費は現金で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부칙 <제 241 호, 2004.7.7>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4 제 2 호 가목의 규정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 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안전협회가 정한 기준에 의한다.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

리원 배치통보는 2004 년 12 월 31 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 41 조의 4 제 1 항 및 별 표 8 의 규정에 의한다.

(4)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 41 조의 4 및 별표 8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ㄱ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 345 호 1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368 호 120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415 호, 2007.12.3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재사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는 "발급기관 마크 "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은 "발급기관명 "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07.1.9>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관련)
消防施設業に対する行政処分基準(第9条第1項関連)

1. 일반기준

1 一般基準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2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 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처분할 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있다.

ア 違反行為が同時に2以上発生した時には、そのうちの中、中間処分基準(中間処分基準が同一な時にはそのうちの一つの処分基準をいう。以下同じ。)によるものの、2以上の処分基準が同じ営業停止である場合には、中間処分の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イ 営業停止処分期間中、営業停止に該当する違反事項がある時には、従来の処分期間満了日の翌日から新しい違反事項に対する営業停止の行政処分をする。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ウ 違反行為の副数による行政処分基準は、最近1年間同じ違反行為で行政処分を受けた場合に適用する。この場合、基準適用日は、違反事項に対する行政処分日とその処分後再び摘発した日を基準とする。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지 경감하여 2분의 1까 처분할 수 있다.

エ 営業停止に該当する違反事項として違反行為の動機、内容、回数またはその結果を考慮して特別な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その処分基準の時軽減して2分の1まで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

마.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의하여 처분한다.

オ この基準に明示されない事項として処分の対象になる事項がある時にはこの基準中最も類似の事項によって処分する。

2. 개별기준

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1)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2)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등록취소		
(3)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4)법 제11조·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5)법 제11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의 업무 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6)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7)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 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8)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고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9)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거나 동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0)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1)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기피·거부·방해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2)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3)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4)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5)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6)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7)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하도급한 때		3월	6월	
(18)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 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 약을 해지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9)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 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 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20)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 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 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의 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2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 가목의 개별기준에 의한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 마. 제2호 나목에 의한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공사도급금액(법 제22조 규정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금액 제외) 계·감리에 대한 또는 설 소방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9조			
(1)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업정지 3월	
(2)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3) 법 제11조·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및 감리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4) 법 제11조·제16조제1항의 설계·감리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 3월		
(5)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6)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7)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8)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9)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0)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1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3)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1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영업정지 1월		
(16)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도급(계약)금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 원)
1	250이하	70,000
2	250초과~300이하	80,000
3	300초과~350이하	95,000
4	350초과~400이하	110,000
5	400초과~450이하	125,000
6	450초과~500이하	140,000
7	500초과~750이하	160,000
8	750초과~1,000이하	180,000
9	1,000초과~2,500이하	210,000
10	2,500초과~5,000이하	240,000
11	5,000초과~7,500이하	270,000
12	7,500초과~10,000이하	300,000
13	10,000초과	330,000

[별표 3]

일반공사감리기간(제16조관련)

1.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 방지설비의 경우 :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유수검지장치. 체크밸브□템퍼스위치의설치, 앵글밸브□소화전함의 매립□스프링클러헤드□포헤드□포방출 구□포노즐□포호스릴□물분무헤드□연결살수헤드□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 탱크 및 포 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통합감시시설□유도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유도등□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분배기□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 가동식 제연경계벽□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단열조치, 기간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 비 고
-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일반공사감리기관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소방시 설완공검사필증의 교부□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별표 4] <개정 2007.12.31>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제23조관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text{시공능력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실적평가액} = \text{연평균공사실적액}$$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당해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자본금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실질자본금의 평점} \times 70 / 100$$

가. 실질자본금은 당해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업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한다.

실질 자본금의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기술력평가액} = \text{전년도 공사업체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times 30 / 100 + \text{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가. 전년도 공사업체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체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시공능력평가자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역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1) 보유기술인력은 당해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월 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후 공사업영위기간이 6월 미만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양도신고서·합병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에 한한다.
-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부표와 같다.
-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 (4) 보유기술인력 1인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3)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한다.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경력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times \text{공사업영위기간 평점} \times 20/100$$

가. 공사업영위기간은 등록을 한 날·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날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 및 공사업영위기간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 및 공사업영위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공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한다.

-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시설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2) 개인이 영위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 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3)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 자가 아닌 법인이
- (4)합병을 하는 경우

다. 공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공 사업 영위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pm 10\%$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신인도반영비 율합계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 된 자의 경우(+3%)
-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 대통령표창(+3%)
 - 그 밖의 표창(+2%)
- (3)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 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2%)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 (4)받은 업체의 경우(+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3%)
-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
-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2%)
 - 3개월 초과(-3%)
-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
-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의 경우(-2%)

[부표] <개정 2008.12.18>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의한 기술등급

등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기술자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 학력·경력 등에 의한 기술등급

등급	학 력 · 경 력 자	경 력 자
특급기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술자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 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 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 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 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 술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 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1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 술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학과를 졸업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 상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경우
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
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급을 적용한다. 1이상이면 해당등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
등학교·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관련학과의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소방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의하되, 해당학과를 포함
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학력·경력을
인정하고,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최초 선택한 소방기술분야1가지만 인정한다.

구 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 과· 학 위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	○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 스템학과)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계 공학과)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	×
경 력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관련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 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선택	선택

5.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소방시설설계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시설관리업체·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업체·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한국

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시설의 시공·설계·감리 또는 점검, 계·기구 소방교육, 소방용기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에 종사한 자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

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업무를 수행한 자

[별표 5]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제25조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때	법제28조 제4항	자격취소		
나.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법제28조 제4항	자격취소		
다.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법제28조 제4항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중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법제28조 제4항	자격취소 자격정지1 년	 자격정지2 년	 자격취소

[별표 6] <개정 2007.1.9>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관련)

1. 조직구성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강원,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권역별로 1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것

나.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1인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할 것

다. 각 지부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2. 기술인력

가. 인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관력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관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자

(라)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관련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마)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관련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소방관련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관련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아)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바닥면적이 60㎡ 이상일 것

나. 강의실: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

다. 실습실·실험실·제도실:각 바닥면적이 100㎡ 이상(실습실은 방화관리자에 한하고,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에 한하며, 제도실은 설계 및 시공자에 한한다)

라. 교육용기자재

기	자	재	명	규	격	수	량	기	자	재	명	규	격	수	량
---	---	---	---	---	---	---	---	---	---	---	---	---	---	---	---

액정비전		1	수압기	20kgf/cm ²	1
빔프로젝트		1	하론농도측정기		1
멀티비전		1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1
비디오 세트		1	전류전압측정기		1
소화기(단면절개)	3종	각 1	검량계	200kgf	1
경보설비시스템		1	풍압풍속계	1~10mm Hg(기압측정 가능한 것)	1
스프링클러모형		1	차압계		1
자동화재탐지설비세트		1	음량계		1
			초시계		1
소화설비 계통도		1	방수압력측정기		1
소화기 시뮬레이터		1	봉인렌치		1
소화기 충전장치		1	포채집기		1
방출포량시험기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 500V(최소눈금 0.1MΩ이하인 것)	1
열감지기기시험기		1	연기감지기기시험기		1
그 밖의 장비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장비기준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각 1개 이상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관련)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4만원
 - 나.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분야별 2만원
 - 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4만원
 - 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분야별 2만원
 - 마.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4만원
 - 바.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분야별 2만원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하는 자 : 1만원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2만원
 - 나.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분야별 1만원
 - 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2만원
 - 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분야별 1만원
 - 마.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2만원
 - 바.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분야별 1만원
4.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2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 소	(전화 :)		
영 업 소	④상 호(명 칭)			
	⑤소 재 지	(전화 :)		
임 원	⑥성 명			
⑦신 청 업 종		☐ 전문업 ☐ 일반업	⑧분 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⑨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⑩기 술 인 력	☐ 주 인 력 명 ☐ 보조인력 명 ☐ 명
⑩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⑫등 록 번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함) 1부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문 : 4만원 일반 : 분 야 별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소방시설업등록 담당부서) 공 고
신 청 서	▼ □ 접수 ↓ 서 면 심 사 ↓ 현 장 조 사 ↓ 기 안 결 재 ↓ 등 록 증 작 성
등 록 증 (등 록 수 첩) 교 부 □	

[별지 제2호서식]

[illegible]

비고 : 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 구분란에 등급별 기술인력을 기재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업등록증

업종 :

상호(명칭) :

대표자 :

생년월일 :

영업소소재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소방시설업등록수첩

시□도

80mm×130mm(보존용기(1종) 120g/㎡)

(제1쪽)

소방시설업등록수첩			
업종명		등록번호	제 호
상 호 (명 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영 업 장 소 재 지			
다른 업종 겸업 사항			
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 업에한함)	백만원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연 도	시 공 능 력	연 도	시 공 능 력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시. 도지사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illegible]

변 경 사 항			
변 경 연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된 내 용	확 인
비 고			

(제4쪽)

[illegible]

소방시설업등록대장					
등 록 번 호		제 호		등록연월일	
상 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다 른 업 종 면 허 및 등 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연 도	자 본 금		진단연월일	진 단 기 관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연 도	시 공 능 력		연 도	시 공 능 력	
소방기술자보유현황					
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자격증(수첩) 종목및번호	성명	자격증(수첩) 종목 및 번호	성명	자격증(수첩) 종목 및 번호	성명

(뒤 쪽)

[illegible]

[별지 제6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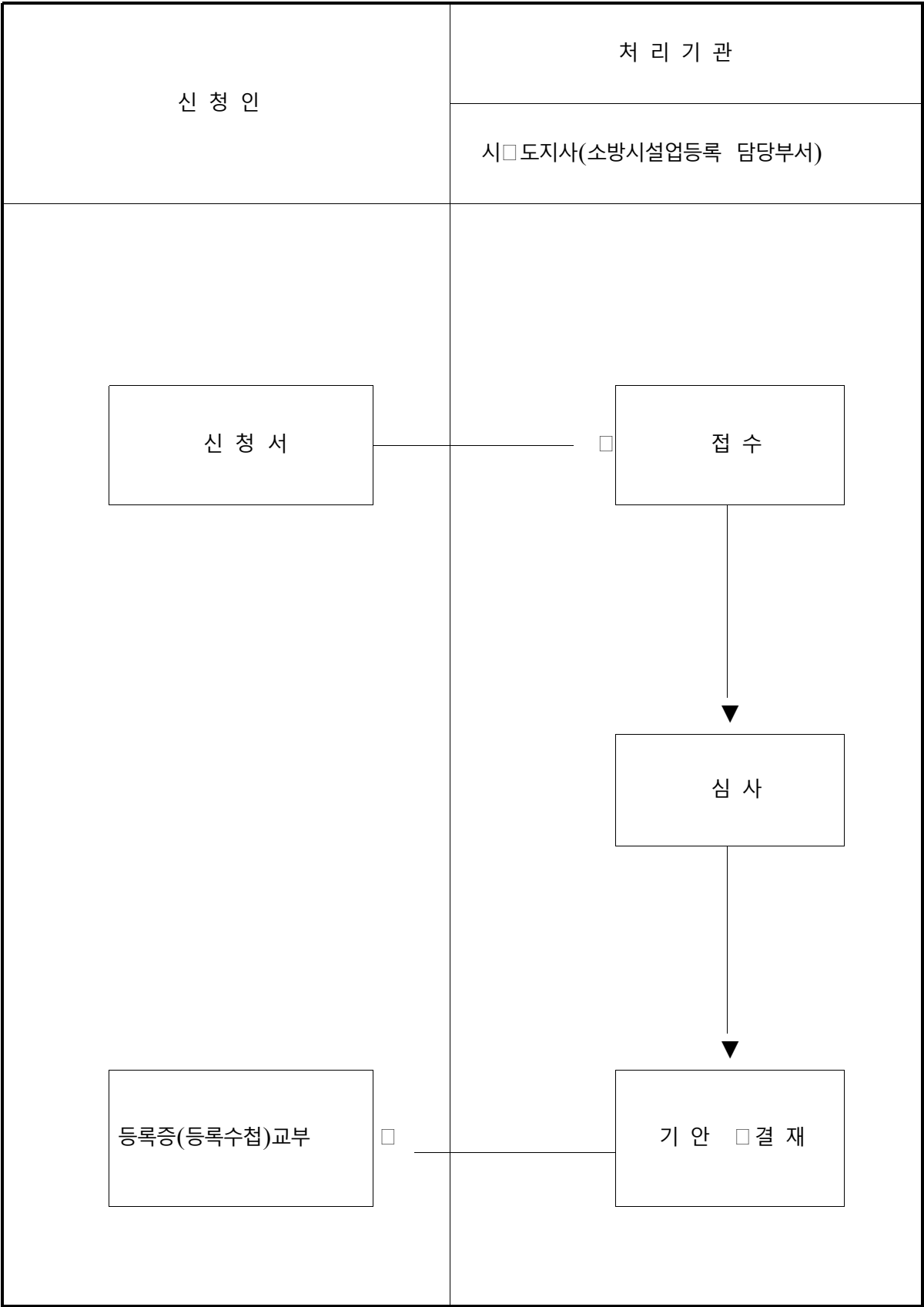
(앞 쪽)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 상호		② 전 화 번 호	
	③ 대표자		④ 영업소소재지	
⑤ 등 록 번 호			⑥ 등 록 일 자	
⑦ 업 종			⑧ 분 야	☐ 기계 ☐ 전기
⑨ 재교부신청종류		☐ 소방시설업등록증 ☐ 소방시설업등록수첩		
⑩ 재교부신청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k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 헤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소방시설업등록수첩 1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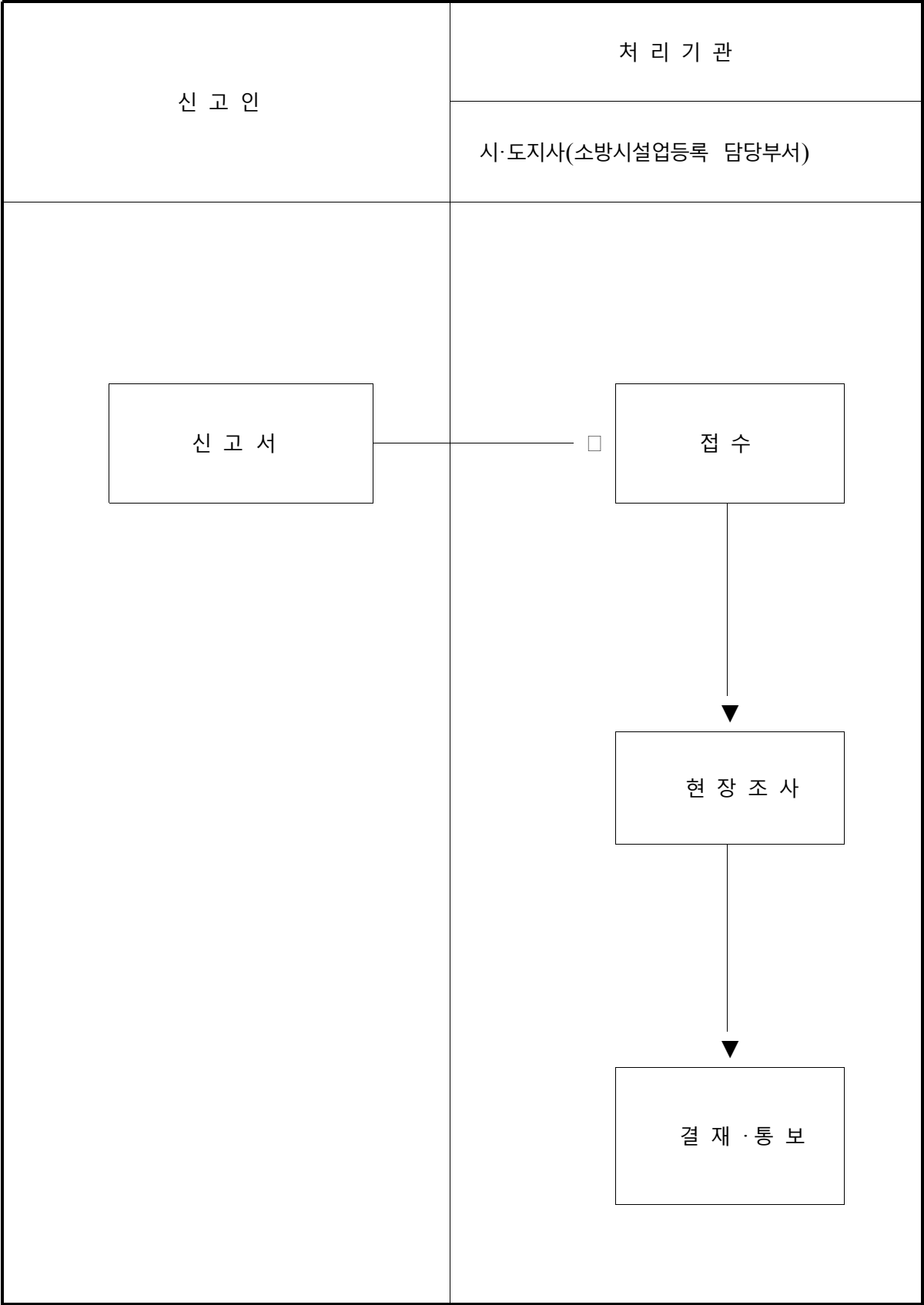


(앞 쪽)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 고 인	①업 종		②등 록 번 호	제 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⑥주 민 등 록 번 호		
	⑦영업소소재지				
변 경 사 항					
⑧변 경 구 분	⑨변 경 연 월 일	⑩변 경 후 사 항	⑪변 경 전 사 항	비 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업등록사항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변경사항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 부	전문 : 2만원 일반 : 분야 별 1만원	
	대 표 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 부		
	기술인력	1. 소방시설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 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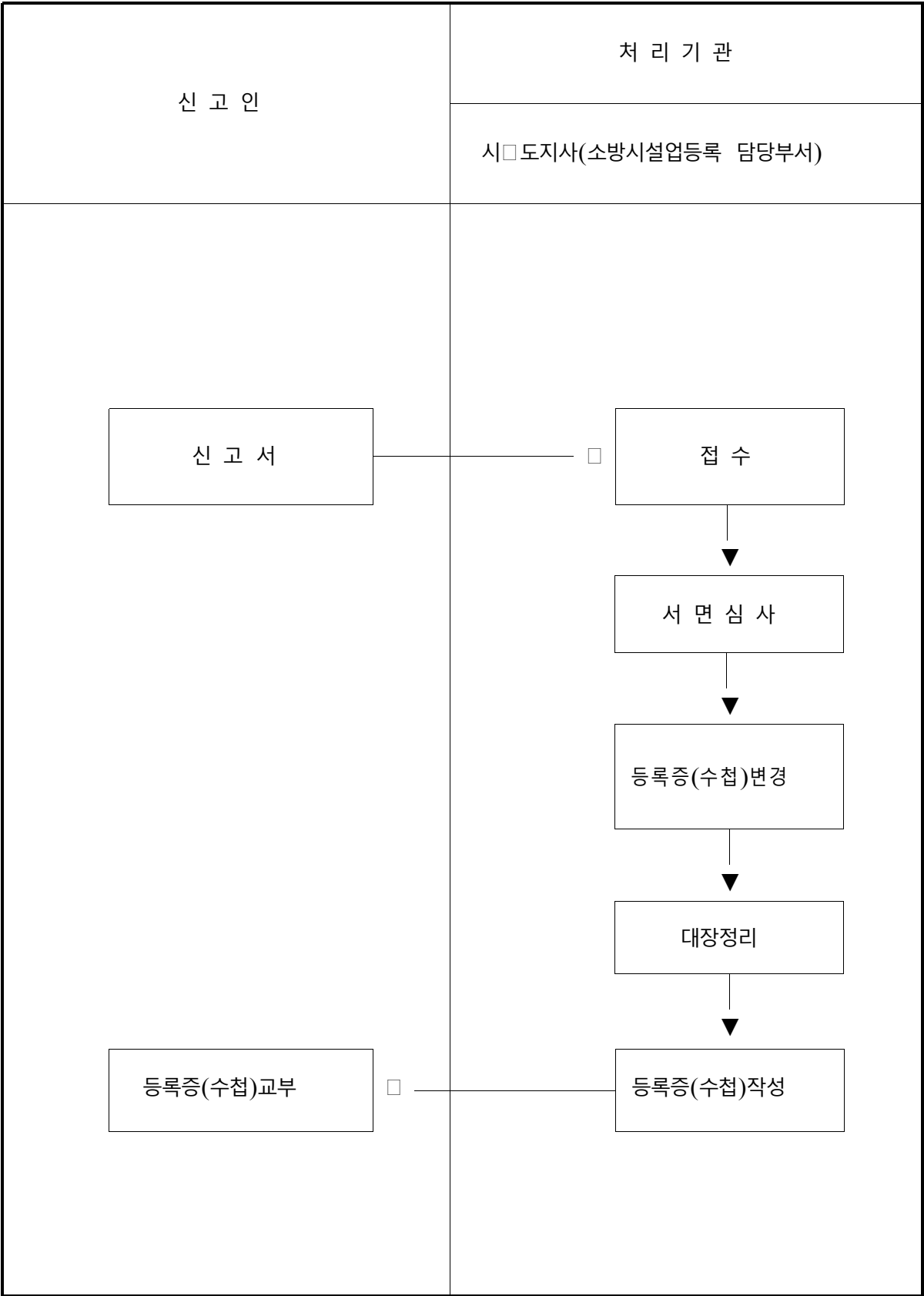


(앞 쪽)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4 일
지 위 승 계 인 (상속인 또 는 양수자)	①업 종		②등록번호	제 호	③등 록 일 자	
	④상 호 (명 칭)		⑤대 표 자		⑥주 민 등 록 번 호	
	⑦주 소	(전화 :)				
	⑧영 업 소 소 재 지					
승 계 전 (사망자 또 는 양도자)	⑨상 호 (명 칭)		⑩대 표 자		⑪주 민 등 록 번 호	
	⑫주 소	(전화 :)				
승계사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 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1부 5. 장비명세서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 인) 1부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FMS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앞 쪽)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							처리기간 14 일
신고인	합병되는 법인	①업 종		②등록번호	제 호	③등록일자	
		④상 호 (명 칭)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 번 호	
		⑦주 소					
		⑧영업소소재지	(전화 :)				
	합병하는 법인	⑨업 종		⑩등록번호	제 호	⑪등록일자	
		⑩ 상 호 (명칭)		⑪대 표 자		⑫주민등록 번 호	
		⑬주 소					
		⑭영업소소재지	(전화 :)				
	합 병 후 존 속 또 는 설 립 되 는 법 인	⑮업 종		⑯등 록 번 호	제 호	⑰등 록 일 자	
		⑯상 호 (명칭)		⑰대 표 자		⑱주 민 등 록 번 호	
⑲주 소							
⑳영업소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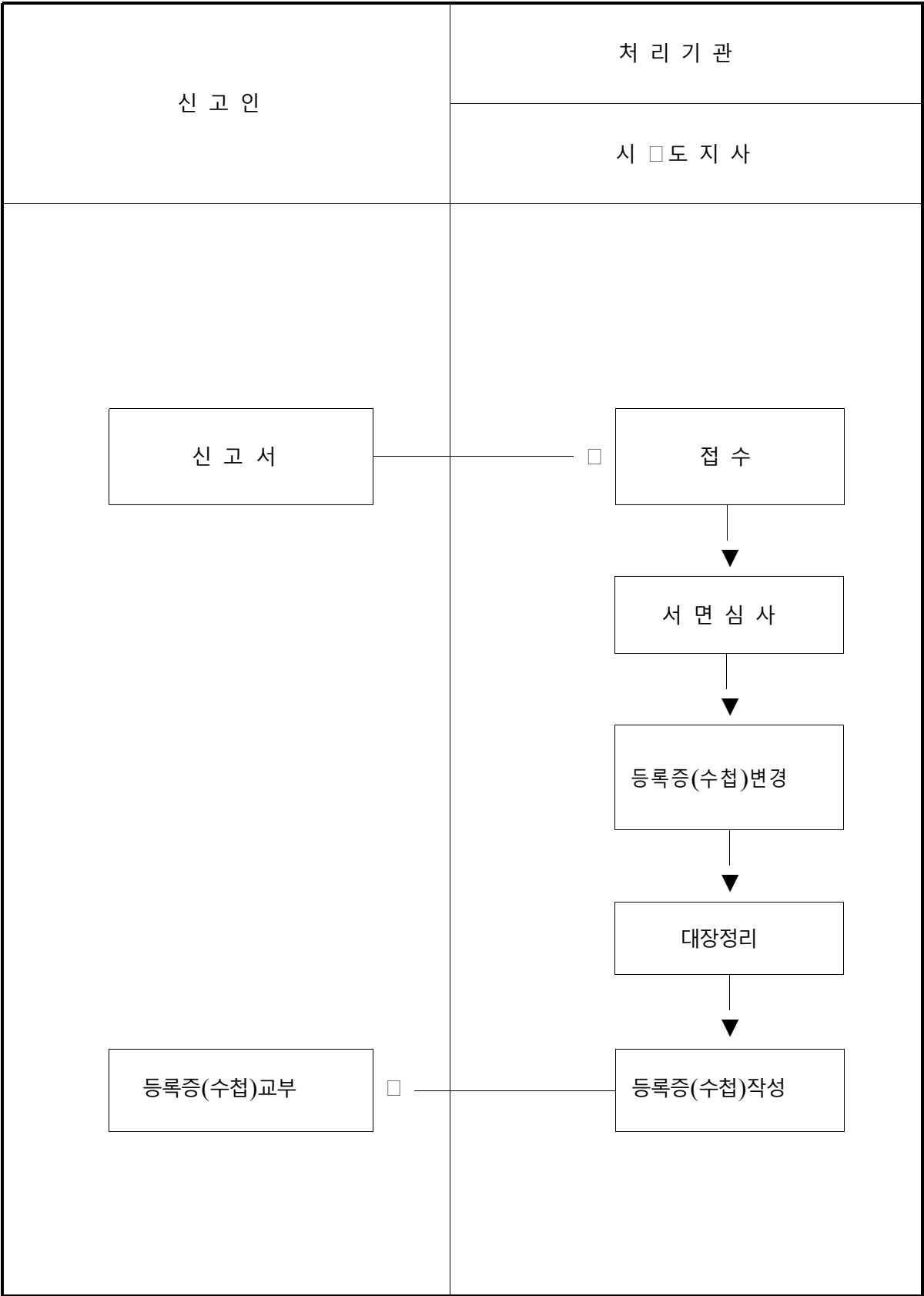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 설공사에 한합니다) 1부 5. 장비명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 10호서식]

소방시설설계기록부

설계업체명 :

[illegible]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공사기록부

공사업체명 :

[illegible]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시설감리기록부

감리업체명 :

[illegible]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일지									
업체명	상호(기관명)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업종		소재지	(전화 :)					
책임감리원	성명		기술인력 등급		배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특정소방 대상물	상호(명칭)			주요용도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 바닥면적 m^2 , 개동							
관계인 또는 도급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주소	(전화 :)							
소방시설 설계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소재지	(전화 :)							
소방공사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개요									
소방공사 감리사항									
일자별	감리사항								비고
※ 상세내역은 별지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대 상물	① 상호(명칭)			② 용도구분		
	③ 소재지	(전 화 :)				
	④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바닥면적	m ² 개동		
관 계 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⑥ 주소					
소방시설공 사업자	⑦ 상호(명칭)	⑧ 등록번호	제 호	⑨ 대표자		
	⑩ 소재지	(전 화 :)				
⑪ 소방시설의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 자	⑫ 성명	⑬ 주소				
	⑭ 자격의종류 및 구분	⑮ 자격증 교부연 월일		⑯ 자격증 번호		
		⑰ 착공일		⑱ 완공일		
⑲ 공사종류	☐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변경사항						
구 분	일 자	제 목	내 용	사 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 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 방 서 장						
구비서류(변경신고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

[illegible]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서 신고 제○○호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나. 소재지(위치) :

다. 건축물 규모 : / 층, 대지면적 m^2 건축면적 , 연면적 m^2

라. 주요용도 :

마. 소방시설

소 화 설 비		소 화 용 수 설 비	
경 보 설 비		소 화 활 동 설 비	
피 난 설 비		그 밖 의 설 비	

2. 소방시설공사업자

업 체 명 (대 표 자)		등 록 번 호	제 호
책 임 시 공 기 술 자		전 화 번 호	

3. 소방공사감리자

업 체 명 (대 표 자)		등 록 번 호	제 호
책 임 공 사 감 리 원		전 화 번 호	

4.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규격:가로 40cm×세로 60cm

※재료:철판 또는 아크릴, 흰색바탕에 검정색 글씨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등록번호	제 호	③ 대표자	
	④ 소재지	(전화 :)				
시공장소	⑤ 상호(명칭)		⑥ 주요용도			
	⑦ 소재지	(전화 :)				
	⑧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⑨ 대지면적		⑩ 연면적		⑪ 건축면적	
⑫ 소방시설의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⑬ 성명		⑭ 주소			
	⑮ 자격의종류 및 구분		⑯ 자격증 교부연월일		⑰ 자격증 번호	
⑱ 공사종류	☐ 신 설 ☐ 증 설 ☐ 개 설 ☐ 이 전 ☐ 정 비 ☐ 그 밖 의 공 사					
⑲ 착공신고일			⑳ 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 방 서 장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등록번호	제 호	③ 대표자	
	④ 소재지	(전화 :)				
부분완공검사 대상특정소방 대상물	⑤ 상호(명칭)		⑥ 주요용도			
	⑦ 소재지	(전화 :)				
	⑧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바닥면적	m ²	개동
	⑨ 부분완공을 받고자 하는 층 또는 동					
⑩ 소 방 시 설 의 종 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⑪ 성명		⑫ 주소			
	⑬ 자격의 종류 및 구분		⑭ 자격증 교부연월일		⑮ 자격증 번호	
⑯ 공사종류	☐ 신 설 ☐ 증 설 ☐ 개 설 ☐ 이 전 ☐ 정 비 ☐ 그 밖의 공 사					
⑰ 착공신고일			⑱ 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소방시설의 부분 완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 방 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일반용, 사용승인동의용)						
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 물	상호(명칭)			주요용도		
	소재지	(전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바닥면적 m^2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소유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소방시설설계 업자또는설계 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공사감리 업자또는 감리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공사 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	시설	해당세부설비명		신고설비	완공여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소					
	화활동상설비방염					
	물품 실내장식					
	물불연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비고 이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일반용, 사용승인동의용)						
부분완공검사 대상특정소방 대상물	상호(명칭)			주요용도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바닥면적 m^2 개동				
	부분완공을 받고자 하는 층 또는 동					
소유자	성명(기관또 는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소방시설설계 업자또는설계 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공사감리 업자또는 감리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공사 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	시설		해당세부설비명		신고설비	완공여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소					
	화활동상설비방염					
	물품 실내장식					
	물불연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대 상물	① 상호(명칭)				② 용도구분		
	③ 소재지		(전화 :)				
	④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바닥면적 m^2 개동				
관 계 인	⑤ 성명(기관 또는법인명)				⑥ 주민등록 번호		
	⑦ 주소		(전화 :)				
⑧ 감리대상 소방시설의 종류				⑨ 감리구분		☐ 상주감리 ☐ 일반감리	
소방공사감 리업자	⑩ 상호 (기관명)				⑪ 등록번호		제 호
	⑫ 소재지		(전화 :)				
책임감리원	⑬ 성 명				⑭ 분야/등급		
소방공사감 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							
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1부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1부							
작성요령 ○구조: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최대이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공사감리계획서						
특정소방대 상물	① 상호(명칭)			② 용도구분		
	③ 소재지	(전화 :)				
	④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 바닥면적 m^2 , 개동				
관 계 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⑥ 주소	(전화:)				
⑩ 소방시설 의 종류				⑧ 감리구분	☐ 상주감리 ☐ 일반감리	
소방공사감 리업자	⑨ 상호(가명명)		⑪ 등록번호	제 호	⑫ 대 표 자	서명
	⑬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공 사업자	⑭ 상호(가명명)		⑮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전 문 ☐ 일 반 제 호	⑯ 대 표 자	서명
	⑰ 소재지	(전화 :)				
⑱ 소방시설공사기간				⑲ 감리기간		
소방공사감 리원배치계 획	⑩ 상 주 감 리	책임감리원 성명	기술인력등급 및 자격구분	담당소방 시설	배 치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감리원 성명	기술인력등급 및 자격구분	담당 소방시설	배 치 기 간
④ 일 반 감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방문 감리계획	○책임감리원			주 회 이상	
기재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계분야 소방시설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구분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책임감리원의 자격을 기재하십시오.					

[illegible]

(4쪽)

인명구조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도등 □ 유도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 조명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화수조 □ 조수조 그 밖의소화용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연 설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 결 송 수 관 설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 결 살 수 설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상 콘 센 트 설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 소 방 지 설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 난 □ 방 화 시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염물품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공사 및 감리일정은 해당연월일에 “↔” 표시하되, “()”안에는 ○ ○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2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대 상물	①상 호		②소재지	(전 화 :)
	③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 바닥면적 m^2 , 개동		
관 계 인	④성명(기관또는 법인명)	서명	⑤주소	
⑥ 변 경 사 유			⑦공정	
⑧ 소 방 시 설 의 종 류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⑨ 감 리 의 종 류		☐ 상주감리 ☐ 일반감리		☐ 상주감리 ☐ 일반감리
소방공사감 리업자	⑩ 상 호(기관명)	(전 화 :)	(전 화 :)	
	⑪ 소 재 지			
	⑫ 등 록 번 호	제 호	제 호	
	⑬ 대 표 자			
책임감리원	⑭ 기술인력등급			
	⑮ 성 명			
	⑯ 자격구분			
⑰ 소 방 공 사 감 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 방 서 장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1부				
작성요령 ○구조 :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최대이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특정소방대 상물	① 상호(명칭)			② 용 도 구 분		
	③ 소 재 지	(전 화:)				
	④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바닥면적 m^2 개동				
관 계 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⑥ 주민등 록번호		
	⑦ 주 소	(전 화:)				
⑧ 소 방 시 설 의 종 류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⑨ 성 명	⑩ 자격구분	⑪ 기술인 력등급	⑫ 성 명	⑬ 자격구분	⑭ 기술인 력등급
책임감리원						
변경된감리 원의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원배치를 통 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감리원 : (서명 또는 인) 소 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특정소방대 상물	① 상호(명칭)			② 용 도 구 분		
	③ 소 재 지	(전 화 :)				
	④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바닥면적 m ² 개동				
관 계 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⑥ 주민등 록번호		
	⑦ 주 소	(전 화 :)				
⑧ 변 경 사 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⑨ 성 명	⑩ 자격구분	⑪ 기술인 력등급	⑫ 성 명	⑬ 자격구분	⑭ 기술인 력등급
책임감리원						
변경된감리 원의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원배치 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감리원 : (서명 또는 인) 소 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1.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7.12.31>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관 리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전화 :)	
근 무 처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전화 :)	
용 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급을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 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7.12.31>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자격등급		관리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일자
학력	기간	학교명		학과명	학위
경력	기간	업체명		발급번호	발급일자
행정처분등	연월일	종류	처분기간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① 상호(명칭)							
	② 소 재 지	(전 화 :)						
	③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 바닥면적 m ² , 개동						
관 계 인	④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⑤ 주 소	(전 화 :)						
소 방 시 설 공 사 업 자	⑥ 상호(명칭)		⑦ 등록번호	제 호	⑧ 대표자			
	⑨ 소 재 지	(전화:)						
소 방 시 설 도 급 인	⑩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⑪ 주소	(전 화 :)						
⑫ 착공일					⑬ 완공예정일			
⑭ 위반사항								
⑮ 조치하여야 할 사항								
⑯ 시정기간								
⑰ 참고자료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소방 공사 감 리 업 자 : (서 명 또 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 방서장								
구비서류 :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을 때에 한합니다)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대상물	① 상호(명칭)		② 주요용도			
	③ 소재지	(전화 :)				
	④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 바닥면적 m ² , 개동				
	⑤ 대지면적		⑥ 연면적		⑦ 건축면적	
소유자	⑧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소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자	⑪ 상호(명칭)		⑫ 등록번호	제 호	⑬ 대표자	
	⑭ 소재지	(전화 :)				
	⑮ 시공한 소방시설	㉞ 성명(기관				
소방시설도급인(발주 자)	또는 법인명)					
	㉟ 주소	(전화 :)				
㊱ 착공일		㊲ 소방시설 완공일		㊳ 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 : 등록번호:제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관계인/도급인/건축사 구비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1부 2. 착공신고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1부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특수장소	① 상호(명칭)						
	② 소 재 지	(전화:)					
	③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바닥면적	m ²
소방시설 성능시험 항목							
☐ 소방대상물 개요표 ☐ 소화기구 성능시험표 ☐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포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동력소방펌프설비 성능시험표 ☐ 비상방송설비 □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표 ☐ 누전경보기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표 ☐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표 ☐ 통합감시시설 성능시험표 ☐ 피난기구 성능시험표 ☐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시험표 ☐ 비상조명등설비 □ 휴대용비상조명등 성능시험표 ☐ 소화수조 □ 저수조 □ 상수도소화설비 □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성능시험표 ☐ 제연설비 성능시험표 ☐ 연결송수관설비 성능시험표 ☐ 연결살수설비 성능시험표 ☐ 비상콘센트설비 성능시험표 ☐ 무선통신보조설비 성능시험표 ☐ 연소방지설비 성능시험표 ☐ 전동기 펌프 및 엔진 펌프 성능시험표 ☐ 각 펌프운전 시험성적서 ☐ 발전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축전지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부하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변전설비개요표(소방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 방 서 장 붙임 :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 1부. 끝.							
기재요령	☐ 소방시설 해당항목에 “V” 표기하십시오. ☐ 표기한 소방시설 항목의 성능시험표를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특 정 소 방 대 상 물	① 상호 (명칭)			② 용도구분			
	③ 소재지	(전화 :)					
	④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 바닥면적 m ² , 개동					
관 계 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⑥ 주 소	(전화 :)					
원 도 급 자	⑦ 상호 (명칭)		⑧ 등록 번호	제 호	⑨ 대표자		
	⑩ 소재지	(전화 :)					
하 도 급 자	⑪ 상호 (명칭)		⑫ 등록 번호	제 호	⑬ 대표자		
	⑭ 소재지	(전화 :)					
⑮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⑯ 하도급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 임 시 공 관 리 자	⑰ 성 명		⑱ 주 소				
	⑲ 자격의 종 류 및 구 분		㉑ 자격증 교부연 월일		○자격증 번호		
			○착공일		○완공일		
○공사종류	☐ 신 설 ☐ 증 설 ☐ 개 설 ☐ 이 전 ☐ 정 비 ☐ 그 밖 의 공 사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사업등록증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

수신:

참조:

제목: 년도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
)년도 당사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등 록 번 호	전문공사업	: 제	호
	일반(기계)	: 제	호
	일반(전기)	: 제	호

영업소재지 :

전화 :

FAX :

E-mail :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비서류 : 뒤쪽기재

구비서류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

- 가. 다목 및 라목 외의 국내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시공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 나. 해외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 다.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신인도 평가를 위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당해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

5.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사본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신청인	①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② 대 표 자		⑤ 주민등록번호			
	③ 영업소재지					
⑥ 일련 번호	⑦ 공 사 명	⑧ 업종	⑨ 당해연도계약금 액 또는 이월금액	⑩ 착공 연월일	⑪ 준공 연월일	⑬ 당해연도 기성액(VAT 포함)
			⑩ 당 초 계 약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발주자)						
및 원도급자 확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수 수 료
						없 음

(복합공사용)

(뒤 쪽)

공사별 시공내역서 공사명 :

공사별 구분	도급 금액 (단위 : 천원)	기 성 내 역 (단 위 : 천 원)				
		전년도까지 기성액	금년도 기성액	미기성액	계	비 고
합 계						

위와 같이 공사별 시공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공사)

대표이사

(발주자□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호 :

대표자 :

*기성내역중 당해연도 기성액의 공사별 합계금액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							
시 공 사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소방시설공사시공내역서							
일련 번호	공사명	총공사계약금액 (단위 : 천원)	착공연 월일	준공연 월일	전년도까지 기성금액(단 위 : 천원)	금년도기 성금액(단 위 : 천원)	미기성금 액(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비고

1. 당해 공사 소방감리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일련번호는 실적신고서 연번과 일치되도록 기입하여야 합니다.
3. 복합공사의 경우 공사별 시공내역서를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복합공사용)

(뒤 쪽)

공사별 시공내역서 공사명 :

공사별 구분	도급 금액 (단위 : 천원)	기 성 내 역 (단 위 : 천 원)				
		전년도까지 기성액	금년도 기성액	미기성액	계	비 고
합 계						

위와 같이 공사별 시공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공사)

대표이사

(발주자□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호 :

대표자 :

*기성내역중 당해연도 기성액의 공사별 합계금액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소방기술자보유현황

상 호	
대 표 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기계	전기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주

- 소방기술자 1인이 2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 자격종목만 기재하십시오.
- 일반 소방시설공사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 확인서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로 나누어 각각 작성하되, 1인 1분야만 기재하십시오.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수첩 사본
- ()년 12월말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

상 호		전 화 번 호	() - () -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품 질 인 증 기 관	국 내		
	국 외		
품 질 인 증 규 격			
인 증 범 위			
인 증 번 호 (No)	제 호		
인 증 일 자			
인 증 유효 기간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구비서류 : 품질경영인증서 사본(원본대조필)			

[별지 제37호서식]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

상 호		전 화 번 호	() - () -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 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 계 제 호 전 기 제 호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 정 기 관 명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 정 일 자			
우 수 소 방 시 설 공 사 업 지 정 업 종 및 공 종	◇ 업종 : ◇ 공종 :		
우 수 소 방 시 설 공 사 업 지 정 시 공 사 명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에서 우수소방업자로 지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패(장) 사본 또는 인정가능한 서류(공문)			

[별지 제38호서식]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사업자신고서

상 호		전 화 번 호	() - () -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 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 계 제 호 전 기 제 호
표 창 수 상 기 관 명			
표 창 수 상 일 자			
표 창 수 상 공 사 지 정 업 종 및 공 종	◇ 업종 : ◇ 공종 :		
표 창 수 상 공 사 명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에서 표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패(장) 사본 또는 인정가능한 서류(공문)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7.12.31>

표 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0호서식]

소방기술자실무교육수료자명단

[illegible]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명 칭(법 인 명)			
	② 대 표 자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주 소			
	⑤ 사 업 소 재 지		⑥ 실무교육 외의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 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 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 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 등본 1부(건 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 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2호서식]

제 호

실무교육기관지정서

기 관 명 : 대

표 자 :

사업소재지 : 지정번호 :

교육종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3호서식]

실무교육기관				☐ 휴 업 ☐ 재 개 업 보 고 서 ☐ 폐 업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명칭(법인명)					
	②대 표 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주 소					
	⑤사업소재지					
휴 업 기 간			~			
재 개 업 일						
폐 업 일						
사 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휴업, 재개업, 폐업)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1. 실무교육기관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